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대책

장 기 윤

(농림부 가축위생과)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대책

장 기 운

농림부 가축위생과 수의사무관

I. 서 론

'97년 12월 13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고 '98년 7월 3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체계가 크게 변화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수의위생조직 뿐만 아니라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축산물 운반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관련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변화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변화된 체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림부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관련규정, 조직 등 축산식품위생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관련업계에 적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본인은 이번 지면을 통하여 변화된 환경속에서 현행의 축산식품위생관리체계 및 실태를 개괄함으로써 축산식품위생업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의 생산 유통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및 국민보건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

II. 생산 유통단계별 위생관리

1. 가축 사육단계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

(1) 사료의 안전관리

•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강화

최근 축산식품의 안전문제의 주요 근원으로 상당비율이 사료안전성과 밀접히 관련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화하였다. 사료중 병원성 미생물 오염이 문제됨에 따라 육계·산란계용 배합사료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됨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또한 '96년 12월 10일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약품의 허용기준”을 고시하여 농약 17종, 동물용의약품 59종에 대한 첨가허용기준을 설정하였고, 착유용 산란용 비육후기용 육계출하용 배합사료에 동물약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사료내 항곰팡이, 항산화제, 착색제, 구리, 아연에 대한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동물약품 첨가 배합사료는 생산부터 출고까지 전과정을 기록관리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사료첨가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 사료의 검사강화

'95년부터 사료생산자의 책임하에 품질을 검사하고 보증하도록 하여 “사료에 대한 위생관리는 사료생산자 책임으로”라는 자주적 위생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다만, 수요자의 의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에서 사료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 1차 검사는 축협사료검사소에서 수행하며 여기에서 불합격되어 확증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2차 검사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사료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검정기관을 축협사료검사소에서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예정이며, 현재 사료의 검정항목도 현재 단백질, 일반조성분보다 농약, 동물약품,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입사료에 대한 사전검정을 강화하여 사료의 공정서가 설정되어 있는 사료는 수입통관전에 유해물질, 농약 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여 합격된 것만 통과시키고 있다.

(2) 동물약품의 안전사용 관리

정부는 식육 및 우유중 동물약품 잔류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므로 그 동안 관련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여 왔다.

동물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불입과 같이 고시하여 항생물질 등 65개 동물약품에 대한 대상동물, 용법, 용량, 휴약기간, 사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사용기준을 규정하였다.

'97년 5월 6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하여 불입과 같이 “요주의 동물약품”을 지정하여 가축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호르몬제 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한 취급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97년 5월 18일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지침”을 개정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는 2001년까지 「우수동물약품 품질관리기준」(KGMP)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2. 도축단계에서의 안전관리

(1) 위생관리체계

도축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규정된 도축업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위생관리대상이 되는 축종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동 법령에 의거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축종은 소, 말, 양(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매추리, 꿩이다. 이들 축종중에서 소, 말, 양, 돼지 및 사슴을 제외한 축종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적용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동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도축장 및 집유장에 검사보조원제도를 도입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를 보조토록 함으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가축 및 축산물검사에 관한 보조업무; 영업장안의 기구, 장비, 시설 등의 위생관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지시하는 업무이다.

도축장에는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의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지 도축규모별로 연차적으로 HACCP적용이 의무화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2) 도축장 시설현대화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

• 도축장 시설현대화 및 정비 지속 추진

농림부는 '91~'96년 사이 도축장 89개소에 도축시설 현대화 자금 387억 8천 6백만원 지원하여 낙후된 도축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권역별로 도축장을 선별 육성하면서 도축장을 정비해 왔다.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위와 같이 시설현대화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 도축장수가 '77년 515개소 → '94년 160개 → '98년 109개로 정리되어 왔으며, '97년 12월 31일 그간 위생적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간이도축장을 폐쇄조치하였는데 이는 전체 35개 간이도축장중 도서·벽지 및 육가공장 부설 6개소 제외한 29개 도축장을 폐쇄 또는 시설 현대화로 일반도축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설치로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Livestock Packing Center)이란 선진국 수준의 도축시설 및 가공·보관시설을 동일장소에 갖추고, 자체생산 내지 양축농가와 계약생산된 소, 돼지를 부분육, 냉장육으로 도축·가공하여, 등록된 상표를 부착하여 자체판매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및 수출하는 일련의 축산물종합유통시설로서 농림부는 앞으로 식육의 생산·유통에 있어 LPC 중심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지육보다는 부분육으로 냉동육보다는 냉장육 중심으로 하여 브랜드육을 육성·판매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LPC는 가축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기능을 일괄처리하는 LPC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위생도축 유통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하여 2000년에 전체 도축량의 40%이상 위생도축하여 수출 및 국내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도별 LPC 개소수는 '96년 2개 → '98년 6개 → '99년 12개소이다.

(3) HACCP 적용

• 배 경

최근 몇 년 사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및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림부는 Codex, 미국, 일본 등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기술로 널리 인정되어 축산식품 생산시 도입·적용하고 있는 HACCP 제도를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적용

방안은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농림부 고시)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제도는 Codex에서 국제교역되는 식품의 생산과정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국으로 수출되는 제3국산 식육은 반드시 HACCP 체계하에서 생산된 식육이어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HACCP 적용대상작업장 및 적용시기

도축장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 1일 사이 도축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의무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도축장은 공중위생상 위해요인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식육의 위생 및 안전성을 보증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축산물가공장은 식육가공장(햄류, 소시지류) 및 유가공장(우유, 발효유, 자연치즈, 가공치즈) 우선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정부가 당해 HACCP 적용업소를 인증하는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HACCP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HACCP 적용기준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HACCP가 적용되고 있는 작업장은 시범적용하는 도축장이 3개소이고, 축산물가공장은 31개소로 유가공장이 28개소이고, 육가공장이 3개소이다.

• HACCP 적용대상 업체 지원강화

정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HACCP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도축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HACCP 위생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HACCP를 도축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위생시설 10종을 설정하고 이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업체수는 1999년 10개소, 2000년 15개소, 2001년 15개소 및 2002년 10개소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전문기관을 통하여 하여금 HACCP 적용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HACCP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인적자원 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들 업체를 돕기 위한 HACCP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3. 축산물가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축산물가공장에서의 위생관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위생당국에 의한 위생검사가 아닌 생산업소의 자주적인 책임관리하에 근거하고 있다.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고 제반사항을 규정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거 위생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동 기준규격에는 일반위생수칙,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공기준,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축산물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기준 및 규격의 적용, 보존 및 유통 기준 등을 규정한다.

모든 축산물가공장은 상기법령에 의거 당해 작업장안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을 작성·비치하고 종원 작업시 적용하여야 한다.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작업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다

4.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강화

1) 축산물작업장 시설기준 강화

축산물작업장 시설기준은 '97년 12월 13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Codex,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도축장 시설기준을 반영하였다.

강화된 시설기준의 일부 내용으로는 도축·처리작업을 반드시 현수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아이빔의 높이규정을 강화했고, 냉장실 내부온도를 15℃이하에서 10℃이하로, 도체 작업실 냉방시설기준을 20℃이하에서 15℃이하로 강화조치하였고, 도체작업도구를 세척 소독할 수 있는 83℃ 이상 온수공급시설을 작업라인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2) 선진적 위생관리기법 도입 적용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도입된 선진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는 HACCP 제도와 작업장위생관리기준(SSOP)이다.

HACCP는 크게 3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기존에는 축산물위생관리의 책임주체가 정부위생당국이었으나 HACCP 체계하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당해 작업장이며, 둘째는, 위생관리의 초점이 기존에는 최종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이었으나 HACCP 체계하에서는 축산물의 생산·유통과정에 위생관리를 집중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마지막으로 셋째는 기존에는 검사가 검사종사원의 개인능력에 주로 의존했으나, HACCP체계에서는 검사내용을 서류화함으로써 공중위생상 검사되어야 할 검사내용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이다.

SSOP는 작업장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내용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작업시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은 작업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SSOP는 “내가 생산한 축산물의 안전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으로 자주적인 위생관리기법이다. 모든 작업장은 동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자는 매일 SSOP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전국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 운용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이 생산·공급됨을 보충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매년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동 검사는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검사요령”(농림부고시) 및 “식육중 미생물검사 요령”(농림부고시)에 의거 국내산 식육에 대하여는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수입식육 및 수출용 식육에 대하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담당한다.

동 모니터링은 검사대상물질별, 식육종류별 오염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체계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선진국 수준으로 작성하였다. 예를 들면,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는 호르몬제는 잔류위험이 높은 소고기만 검사하고, 농약은 잔류위험 낮은 닭고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미생물검사의 경우 대장균 O-157:H7 검사는 주로 문제되고 있는 소고기에서만 그리고 캄필

로박터균은 닭고기에서만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산 및 수입산 식육에 대한 위생검사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한 검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입축산물을 둘러싼 통상마찰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수준의 위생검사를 수행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축산물을 수출하여 결국은 축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검사대상물질은 유해잔류물질의 경우는 총 44개 물질로 항생물질 8, 합성항균제 11, 농약 20, 호르몬 2, 중금속 3이며, 미생물의 경우는 총 9종으로 오염지표세균이 2종이고, 병원성 세균이 4종 그리고 탐색조사 세균이 3종이다.

4) 위생 지도·감독 강화

농림부는 미국 등 선진제국과 비교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도축장의 시설수준, 종업원 위생수준 등 전반적인 위생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인정하고,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도축장의 시설기준을 Codex, GMP 기준과 미국, 일본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대폭 강화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전 도축장에 대하여 새롭게 도입 변경된 도축시설기준 및 위생관리내용 부합여부 현지 점검한 바 있어, '99년중 농림부, 검역원 및 시·도에서 총 5회 현지점검 실시하여 관련법령에 부적합 도축장 79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앞으로 농림부는 도축장에 대한 위생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도축시설 개선 및 도축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4. 축산물 보관·운반·판매단계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

식육유통 관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이고, 영업신고업종은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이다.

축산물보관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된 시설기준을 충족한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관업소의 작업장은 냉장·냉동 시설, 작업장 바닥 내수처리, 방충·방서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축산물운반업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시설기준에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운반을 위한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및 영업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축산물운반차량은 냉장 또는 냉동시설 및 지육현수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중 주요 내용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수송 금지, 운반차량 수시 세척·소독 실시, 현수상태의 지육 운반 그리고 식육운반시 냉장 또는 냉동상태 유지 의무이다.

5. 축산물 위생감시

1) 축산물 수거검사

축산물이 유통과정중에서 위생적으로 취급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축산물위생감시지침”(농림부고시)을 운용하고 있다.

동 고시에 의거 위반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을 분류하여 반복적으로 수거·검사하고, 식육 및 원유는 시·도(시·군·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주요 위반항목중심으로 지역별·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중심으로 실시하며, 제품수거는 원칙적으로 축산물가공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수거검사 대상품목은 식육 원유의 경우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식육부산물 및 원유, 식육가공품은 햄·소시지, 분쇄육가공품, 양념육류(육지물), 유가공품은 우유(시유), 조재유류, 아이스크림류, 치즈류 및 발효유류이며 이외에 특별단속활동에서 수거한 축산물 등 문제축산물이다.

2)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활동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여름철에 변질되기 쉽거나 수요가 많은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또한 “성수기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축산물 성수기인 연말연시, 설날 및 추석절에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3)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가 복지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농림부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축산물에 관한 한 위생관리의 최종 정책부서가 농림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축산물에 관한 정책의 초점이 소비자의 이해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Ⅲ. 축산물위생관리체계

1. 축산식품관리 일원화체계 구축

1) 관리업종 이관내역

'97년 12월 13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기존에는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던 축산물가공품관련 업종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종전예의 관리업종은 2개 업종으로 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정되었으나, 이관된 업종은 4개업종(9개 세부업종)으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이다.

이관대상 관련산업 분야는 협회가 4개소이고, 업소수는 58,973개소에 이르는 등 연관되는 분야가 방대하며,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 1>과 같다.

2) 축산물관리체계 구축

농림부는 효율적인 축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98년 8월 1일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동물검역소를 통합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설치하여 중앙의 축산물위생관리 및 감시기능

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도(시·군·구)의 축산부서와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이관되는 업무를 담당할 인원을 전담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축산물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 바 있다. 실험실 검사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를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폭 보강하고 검사원들에게 검사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검사능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전국의 축산물위생검사담당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포괄적 위생관리체계 구축하였다.

2. 수입축산물검사체계

1) 검사체계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수행되며, 수입신고된 축산물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해 검역 및 위생검사를 받게 된다. 위생검사내용은 수입축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 검사로 나뉘어진다.

(1) 서류검사

모든 수입축산물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서류검사를 받게 되는데, 주요 검사내용은 수입된 축산물에 대하여 어디에서 수입되었는지, 수량이 얼마인지, 어떠한 상태로 수입되었는지, 수출시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한 생산조건을 충족함을 관련 증명서로 보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사이다.

수입축산물중 일부의 경우는 관능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검사만으로 위생검사를 갈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3가지로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의 경우, 연구·조사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인 경우, 그리고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경우이다.

(2)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외관, 냄새, 이물부착, 맛 등 사람의 오감을 이용하여 수입된 축산물이 식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원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의 대부분이 관능검사를 통하여 완료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

관능검사 대상인 축산물은 크게 4가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지정검역물;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그리고 보세구역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를 요구한 축산물이다.

(3) 정밀검사

정밀검사는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항생물질, 환경호르몬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나 *E. coli* O157:H7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 등이 축산물에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하기 위한 실험실검사이다.

정밀검사 대상인 축산물은 크게 5가지로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인 경우; 국내 외에서 유해성 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어 문제가 제기된 축산물인 경우; 과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인 경우(연속 5회 검사); 그리고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인 경우(연속 5회 검사)이다.

(4) 무작위 표본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는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함으로써 수입축산물이 어떠한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한 위생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검사이다.

무작위표본검사는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인 경우;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인 경우;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인 경우;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이다.

2) 검사요령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크게 평시검사, 강화검사 및 사후관리로 나눌 수 있다.

(1) 평시검사

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능력, 그간 검사자료, 검사대상물질의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검역원에 이미 구축되어 운용중인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utomatic Import Information System : AIIS)”을 활용하여 무작위표본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 이는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데, AIIS는 수출국/수입품목/수출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사체계를 운용한다.

(2) 강화검사

강화검사는 그간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어 평시검사를 강화하여 좀 더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료를 전수검사하는 등 검사강화조치한다. 이는 주로 국내 외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과거 정밀검사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축산물 다시 수입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3)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를 취하는 것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축산물을 회수조치(recall)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3) 검사품목 및 대상항목

식육의 경우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11개 품목이 검사대상품목이며, 검사대상항목은 DDT 농약 등 113종이다.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에 의거 햄·소시지 등 102개 품목이 검사대상품목이며, 검사대상항목은 보존료 등 89개 항목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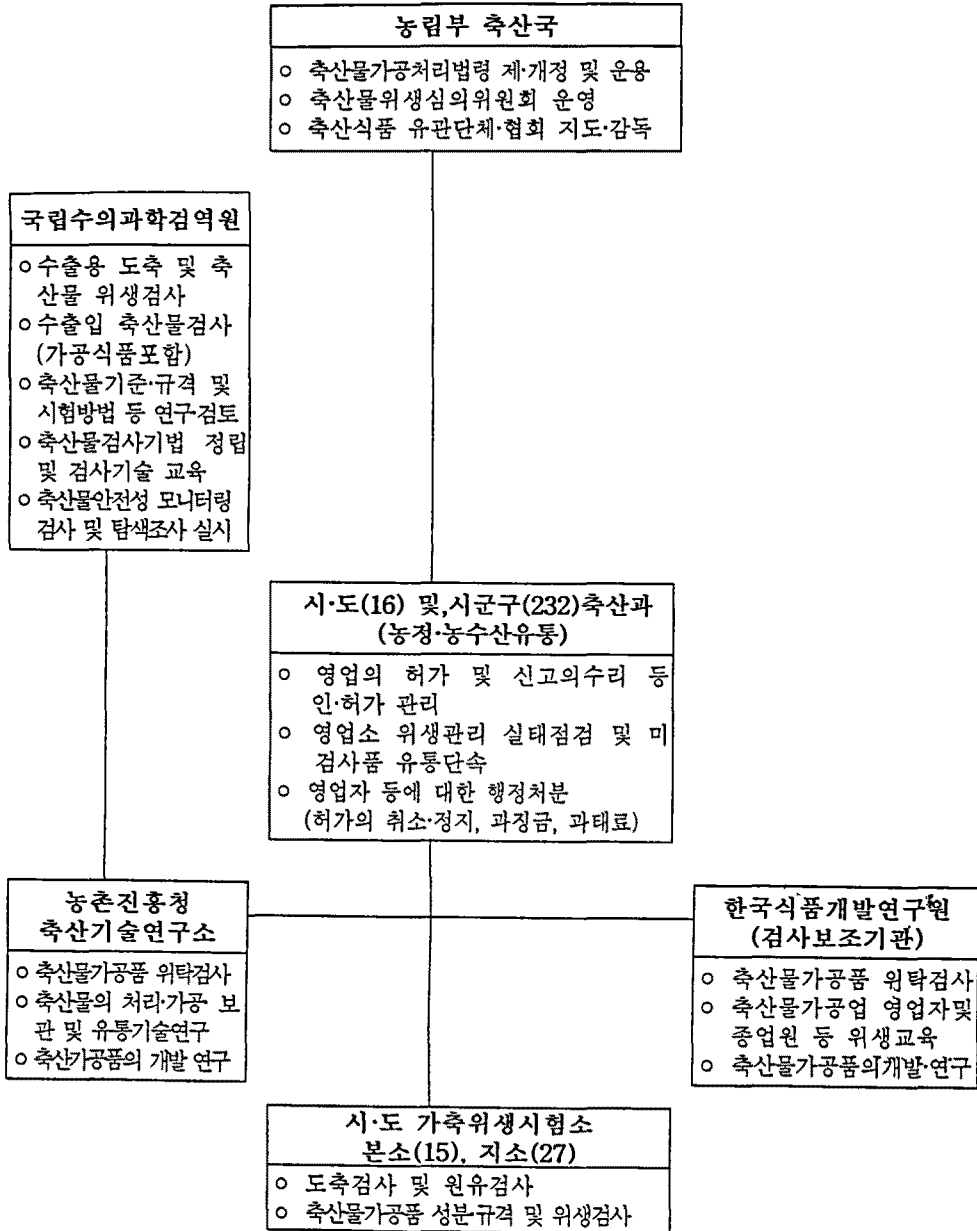
IV. 맺음말

최근 벨기에의 축산물 다이옥신 오염사건, 개고기의 도축법제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전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정책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미흡한 부분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축산물위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나 법률적 측면보다는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개개인들의 의식수준이라고 본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각의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축산물위생은 확보될 것이다.

<참고 1>

축산식품관리업무흐름도 및 기관별 관리업무



<참고 2>

수입축산물검사 흐름도

